

관내 기숙사 운영비(급식비) 지원 지침

1. 지원대상 : 남원시에 주소를 둔 해당 학교 기숙사 학생
2. 지원내용 : 관내 주소를 둔 해당 학교 기숙사 학생 급식비 월별 지원
3. 지원액 : 1인당 월정액 72,000원
 - 산출근거 : 4,000원(평균 급식단가)× 2식 × 30일분의 30%

단, 급식비 월 실질납입금이 월정액(72,000원) 이하 시 실질납입액으로 지원
4. 지원기준
 - 월 30일 기준, 15일 이상 관내(남원시)자의 경우 당월 지급대상
 - 주소여부 확인 : 주민등록 등·초본 확인
 - 확인결과 요건 미충족 시 → 보조금 환수조치
5. 정산서 제출서류
 - 보조금정산서, 지출결의서(집행근거), 개인별 집행내역 각 1부.
 -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1부.
6. 참고사항

【전입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책】

- 복지수혜대상자 주소 이전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: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이나,
⇒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는 경우는 사회보장가구에 포함
- 건강보험증 추가증 신청
 - 직장가입자의 경우 : 자녀가 피부양자로 되어있다면 별도신고 필요 없음
 - 지역가입자의 경우 : 건강보험공단에 추가증 신청서 제출, 미신고시 기본료 부과